밀링기 재해를 여 방합시다!

김해. 양산. 밀양지역 재해사례





재해 개요 양산 소재OO기업, 밀링기 기계가공 중 제품 확인을 하기 위해 가공 부위를 만지다 끼임

예방 대책

- ▶ 기계 가공 중에는 신체투입 금지
- ▶신체투입이 되지 않도록 방호울 부착

재해사례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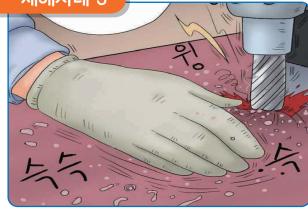


재해 개요 김해 소재OO기업, 밀링가공 작업 중 회전축에 장갑이 말리면서 손가락이 골절됨

예방 대책

- ▶ 말릴 위험이 있는 면장갑 착용 금지
- ▶ 손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없는 가죽장갑 등 사용

재해사례 3



재해 개요 김해 소재OO기업, 밀링가공 중 발생하는 칩을 제거하려다 칩에 장갑이 말리면서 손가락을 베임

예방 대책

- ▶ 칩방호덮개 부착
- ▶ 기계작동 중지 후 작업, 수공구 사용

재해사례 4



재해 개요 양산 소재OO기업, 밀링 가공툴을 교체하기 위해 작업 중 회전체 사이에 낀 절삭 칩이 튀어 눈에 박힘

예방 대책

- ▶ 회전체 방호 가드 부착
- ▶ 정비, 수리, 부품교체 시는 기계의 전원차단 후 실시







빌링기 자율 안전점검표

☆ 작업 전 안전점검(개념)

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작업 전에 파악하여 그 위험을 제거 또는 통제한 후 작업 실시

🗐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

구분	점 검 항 목	점검결과	조치확인
1	보호구 지급·착용 (작업에 적합한 보호구)		
2	안전보건표지 부착 (위험장소, 설비 등)		
3	안전보건교육 실시 (위험요인, 안전작업방법)		
4	안전작업절차 지키기 (절차 제정, 준수)		

☑ 점검항목(금속가공기계 공통)

구분	점 검 항 목	점검결과	조치확인
1	기계의 동력차단장치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·클러치 및 벨트이송장치를 설치하여야 함〈안전보건규칙 제88조〉		
2	장갑의 사용금지 날·공작물 또는 회전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어야 함 〈안전보건규칙 제95조〉		
3	위험한계부위 방호덮개를 설치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〈안전보건규칙 제103조 제1항〉		
4	프레스 또는 전단기 위험방지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 스위치를 제거하여야 함 〈안전보건규칙 제103조 제4항〉		
5	금형조정작업의 위험방지 프레스 등의 금형을 부착·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슬라이더가 갑자기 작동함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여야 함 〈안전보건규칙 제104조〉		



